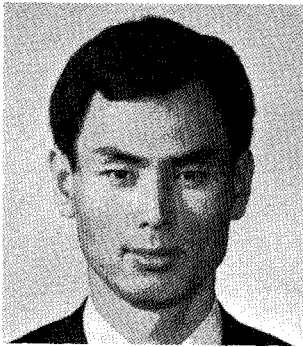


축산업관련

축산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통상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실은 축산업의 주 부담비용인 배합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으로 의제매입 세액과 관련하여 축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타 축산업과 관련된 소득표준을 관계를 상식적인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 소득표준율



이 규 복

홍성사료 경리부장

I. 부가가치세란?

1) 의 의

부가가치세는 말그대로 재화와 용역의 이동과 공급 및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에 부가(附加)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국세중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국세이다.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수입(輸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법으로(부가가치세법12조) 면세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① 가공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

축, 수산물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등으로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및 원시가공을 거친 것, ② 수도물, ③ 연탄과 무연탄·(이하생략)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그러한 재화와 용역을 취하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 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백색용지로 교부하고 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녹색과세사업자중 과세특례자는 적색)

따라서 축산업은 위 ①항에 해당되어 면세가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배합사료는 과세가 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수입공급원재료는 본선인도가격(F. O. B) × $\frac{10}{110}$ = 의제매입세액

제산예시 :

- ㉠ 배합사료제조시 국산옥수수 100M/T을 운반비 1,500,000원 곡물가액 33,000,000원
제 34,500,000원으로 구입시 의제매입세액은 3,000,000원 { (34,500,000 - 1,500,000원) $\frac{10}{110}$ }
- ㉡ 수입소맥 100M/T을 C&F가격(운임포함가격) 24,000,000원 구입시(운임 2,000,000원)
의제매입세액은 2,000,000원 { (24,000,000 - 2,000,000원) × $\frac{10}{110}$ }

② 의제매입세액과 배합사료생산원가의 상관관계

생산원가 = 원재료 + 임금 + 이자 + 임대료 기타 비용이며, 생산원가 + 이윤 = 배합사료 매출가격이 될 경우 면세로 구입하는 원재료중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경우 공제되는 의제매입세액만큼 원재료원가가 상승되어 생산원가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가격의 일부 상승요인이 될수 있다. 또한 86년 1월 1일 부터는 공제율이 $\frac{10}{110}$ 에서 $\frac{5}{105}$ 로 인하되어 동 공제율 차액만큼 배합사료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게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4) 기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축산업자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와는 관련이 없으나, 배합사료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보관용은 부가세 세액포함 축산원가에 원재료비 처리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제출용 1매는 정리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신고 기간중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배합사료 제조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 처리시 불부합자료가 발생치 않도록 필히 그 제출이 요망된다. (제출치 않을 시도 어떤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배합사료 제조회사의 경리실무자가 국세청의 전산자료불부합 자료가 발생되어 관할세무서에 가서 그 해명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축산업과 소득표준율

1) 소득표준율의 의의

소득표준율이란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소득은 경기의 변동(호경기, 불경기등) 사업의 규모, 지역별 일정여건을 참작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을 1개 사업년도로 하여 국세청에서 산하관서를 통하여 주로 기장(장부)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 수입금액별로 소득금액 조사를 하여 표준소득을 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각종 경제단체의 자문자료, 전년도 표준율, 전년도 법인의 신고 및 정부 결정 소득을 등 기타 참고자료를 기초로 다음년도 3월 25일까지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확정 공표하는 부동산, 사업, 산림, 기타소득의 수입금액별 소득을 산출하고자 하는 기준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득표준율은 주로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비치하고 있는 증빙자료 또는 소득금액을 산출할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을 정부에서 조사 결정하거나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데 활용되는 기준율이 된다.

2) 84년도 축산업의 종목별 소득표준율 내역

금액단위:천원

종 목 구 분	최 저 율	기 본 율	최 고 율
낙농 및 육우사육	15,000 이하 6.3%	19,000 이상 126,000 이하 8.0%	173,000 이상 10.9%
양돈	12,000 이하 8.0%	15,000 ~ 101,000 이하 10.0%	138,000 이상 13.6%
양봉	6,000 이하 14.3%	8,300 ~ 56,000 이하 18.0%	77,000 이상 24.7%
양계	12,000 이하 8.0%	15,000 ~ 101,000 이하 10.0%	138,000 이상 13.5%
사슴	8,000 이하 11.6%	10,000 ~ 69,000 이하 14.5%	95,000 이상 19.9%
기타	9,600 이하 10.0%	12,000 ~ 80,000 이하 12.5%	110,000 이상 17.1%

3) 축산업중 양계의 경우 수입금액별 소득표준율 적용 예시

- ① 수입금액이 12,000천원 이하의 경우는 곧 바로 그 금액의 8%가 소득금액이 된다.
- ② 수입금액이 12,000천원 초과 15,000천원 미만의 경우는 다음 공식에 의거 표준율을 산출한다.

$$10\% \times \frac{\text{해당수입금액}}{15,000 \text{천원}} = \text{표준율이 된다.}$$

이 경우 $\frac{\text{해당수입금액}}{15,000 \text{천원}}$ 이 소수세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그 숫자에 10% 곱하여 산출된 숫자에 소수 두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수입금액이 14,590,000원의 경우
 가) 표준율 9.7%
 $14,590,000 \text{원} \div 15,000,000 \text{원} = 0.97266$ (소수세째 자리 절사)
 $= 0.97$
 $10\% \times 0.97 = 9.7\%$

나) 소득금액은 14,152,300원이다
 $(14,590,000 \text{원} \times 9.7\% = 14,152,300 \text{원})$

- ③ 수입금액이 기본율 해당 구간에 (15,000천원 ~ 101,000이하) 속하면 그 수입금액에 10

%를 곱하면 소득금액이 된다.

- ④ 수입금액이 기본율초과 최고율 미만에 속할 경우 소득표준율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

$$10\% \times \frac{\text{해당수입금액}}{101,000 \text{천원}} = \text{소득표준율}$$

이 경우 역시 계산과정은 ②항의 경우와 같다.

예: 수입금액이 129,500,000원일 경우
 가) 소득표준율 10.2%이다.

$$\frac{129,500,000}{101,000,000} = 1.282178 \dots = 1.28$$

$$10\% \times 1.28 = 10.28 = 10.2$$

(소수두자리 절사)

나) 소득금액은 13,209,000원이다.
 $129,500,000 \text{원} \times 10.2\% = 13,209,000 \text{원}$

- ⑤ 수입금액이 최고율인 138,000천원 이상일 경우는 그 수입금액에 13.6%를 곱하면 소득금액이 된다.

- ⑥ 기타 다른종목도 최저율, 기본율, 최고율 등과 각 구간에 속하는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양계업과 같은 산출 예시로 소득금액을 구할수 있을 것이다.

적정생산·적정출하로 발전하는 양계산업